|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제 58 호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2020 년 10 월 17 일 통과 후 공포되어 2020 년 12 월 1 일부터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20 년 10 월 17 일  전문은 다음과 같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제법**  (2020 년 10 월 17 일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 통과)    목록  제 1 장 총칙  제 2 장 관제정책, 관제리스트, 관제조치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 절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리  제 3 절 군수품 수출 관리  제 3 장 감독관리  제 4 장 법률책임  제 5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이행,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군용과 민용 겸용 물품, 군수품, 핵 및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제품(이하 관제 물품이라 통칭)의 수출 관리, 제어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한다.  위 조항의 관제 물품에는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된다.  본법에서 지칭된 수출 관제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경외로 전이되는 물품의 관제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과 기타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관제 물품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본 법에서 지칭된 군용, 민용 물품은 민사용도이지만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하며, 특히 대규모 살상 무기와 그 운반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사용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를 뜻한다.  본 법에서 지칭한 군수품은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장비, 전용 생산설비 및 기타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를 뜻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핵은 핵재료, 핵설비, 반응로용 비핵재료 및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뜻한다.  제3조 수출 관제 작업은 전반적인 국가안전관, 국제평화 수호, 안전과 발전 통일 계획 등을 견지하고 수출관제 관리와 서비스를 완비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된 수출관제 제도를 실행하며, 관제 리스트, 명부 혹은 목록(이하 관제 리스트로 통칭), 수출허가 시행 등의 방식을 통해 관리한다.  제5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수출관제 직능의 부서(이하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이라 칭함)가직책 분담에 따라 수출관제 관련 작업을 맡는 것을 책임진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수출관제 관련 작업을 분담한다.  국가에서는 수출관제 작업 조정 메커니즘 구축, 수출 관제 작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총괄, 조정 작업을 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과 국무원의 관련 부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부서와 같이 수출관제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만들어 수출관제 작업에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시의적절하게 관련 산업의 수출관제 지침을 발표하고, 수출경영자가 수출관제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며, 경영을 규범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제 관련 작업을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수출관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관제 관련 국제규정 제정에 참여한다.  제7조 수출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련 상회, 협회 등의 산업 자율 조직에 참가할 수 있다.  관련 상회, 협회 등 산업의 자율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장정에 따라 구성원에게 수출 관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조와 자율 작용을 한다.  제2장 관제정책, 관제리스트, 관제조치  제8조 국가 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같이 수출관제 정책을 제정하며, 그 중 중요한 정책은 국무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제물품의 수출 목적지 국가와 지역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험등급을 확정, 상응하는 관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 수출관제 정책에 근거하여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부문과 수출관제 리스트를 제정, 조정하여 제때에 공포한다.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 수요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 혹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고 국가수출관제 부문은 수출관제 리스트 이외의 물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관제를 실시하며 공고를 발표한다. 임시관제의 실시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시관제 실시기한이 만기되면 제때에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임시관제 취소, 임시관제 연장 혹은 임시관제 물품을 수출관제 리스트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한다.  제 10 조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 혹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고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수출관제물품의 수출 금지 혹은 관련 관제물품이 특정 목적 국가와 지역, 특정 조직과 개인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수출경영자가 관제물품 수출에 종사할 경우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관제물품의 수출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할 경우 상응한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관제물품의 수출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수출관제 리스트에 열거된 관제물품 혹은 임시 관제물품의 수출경영자는 국가 수출관제 관리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관제 리스트에 열거한 관제물품과 임시 관제물품 이외의 물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수출경영자는 관련 물품, 기술과 서비스가 아래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알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의 통지로 알게되었을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  (2) 대규모 살상 무기 및 무기 운송, 적재 공구의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  (3) 테러 목적에 사용  수출경영자가 수출의 물품, 기술, 서비스가 본 법 규정의 관제물품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자문을 구하고,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제때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13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아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출경영자의 수출관제 물품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허가 혹은 불허가의 결정을 한다.  (1) 국가 안전과 이익  (2) 국제의무와 대외적 약속  (3) 수출유형  (4) 관제물품의 민감 정도  (5) 수출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  (6) 엔드유저와 최종 용도  (7) 수출경영자의 관련 신용기록  (8)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요소  제14조 수출경영자가 수출관제 관련 내부 준법제도를 구축하고 운영상황이 양호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수출 관련 관제물품에 대해 통용하는 허가편리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제15조 수출경영자는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관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문서는 엔드유저 혹은 최종 용도의 소재국가와 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6 조 관제물품의 엔드유저는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의 허락을 받지 못한 한, 관련 관제물품의 최종 용도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며, 어떠한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 약정해야 한다.  수출경영자, 수입상이 엔드유저 혹은 최종 용도가 변경됨을 발견할 경우, 즉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 용도의 위험관리 제도를 만들고, 관제물품의 엔드유저와 최종용도에 대해 평가, 대조검사를 진행하고, 엔드유저와 최종 용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한 수입상과 엔드유저에 대해 관리, 제어 명단을 만든다.  (1) 엔드유저 혹은 최종 용도 관리요구를 위반  (2)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 가능  (3) 관제물품이 테러 목적에 사용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과 엔드유저에 대해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련 관제물품의 거래를 금지,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물품의 수출 중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경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와 거래할 수 없다. 수출경영자는 특수상황으로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와 거래해야 할 경우 국가수출 관제관리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가 조치를 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관리제어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 가능하며, 국가수출 관제관리부문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되어 있는 수출상, 엔드유저 명단을 관리제어 명단에서 제외를 결정한다.  제19조 수출물품의 발화인 혹은 대리 통관업체가 관제물품을 수출할 경우, 해관에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부여한 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대로 통관 수속을 진행한다.  수출물품의 발화인이 해관에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부여한 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않았고, 해관에서 수출물품이 수출관제 범위에 속할 수 있음을 증거로 표명 가능할 경우, 수출물품 발화인에 질의해야 하며, 해관은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검별을 진행해 줄 것을 제기하고, 국가 수출관제관리감독부문의 검별 결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처리한다. 감별 혹은 질의 기간에 해관은 수출물품을 통관시킬 수 없다.  제20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수출경영자의 수출관제 위법행위에 대해 대리, 물품운송, 택배, 통관 수속,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2절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리  제21조 수출경영자가 국가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 군용, 민용 물품의 수출 신청을 할 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국가의 군용, 민용 물품 수출관제관리부문은 군용, 민용 물품의 수출신청을 수리하고, 단독 혹은 관련 부문과 본 법과 행정법규에의 규정에 따라 군용, 민용 물품의 수출신청에 대해 심사하며, 법정기한 내에 비준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일적으로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3 절 군수품 수출 관리  제23조 국가에서는 군수품 수출 전문경영제도를 시행한다. 군수품 수출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군수품 수출 전문경영 자격을 얻어야 하며, 결정된 경영 범위 내에서 군수품 수출 경영활동을 한다.  군수품 수출 전문경영 자격은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심의 비준한다.  제 24 조 군수품 수출경영자는 관제 정책과 산업의 속성에 따라 국가군수품수출관제관리부문에 군수품 수출항목의 입안, 군수품 수출항목, 군수품 수출계약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중요한 군수품의 수출 항목 입안, 중요 군수품 수출 항목, 중요 군수품 수출계약은 국가군수품수출관제관리부문과 관련 부문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 비준을 받는다.  제25조 군수품수출경영자는 군수품 수출 전, 국가군수품수출관제관리부문에 군수품 수출 신청, 수출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군수품 수출경영기업의 군수품 수출 시에는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진행한다.  제26조 군수품수출 경영자는 비준을 거친 군수품 수출 운송기업에 군수품 수출 운송 및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이 관련 부서와 규정한다.  제27조 군수품 수출경영자 혹은 과학연구 생산업체가 국제적 군수품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국가군수품 수출관제관리부문에 심의 비준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28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관제물품 수출활동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영업장소 혹은 기타 관련 장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   (2) 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 조직 혹은 개인에 대해 피조사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  (3) 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 조직 혹은 개인의 관련 서류, 계약, 회계장부, 업무 서신 등의 문서, 자료를 열람 및 복제  (4) 수출에 사용되는 운송공구 검사, 의심되는 수출물품의 선적 중지, 비합법적 수출물품에 대한 송환 명령  (5) 사건에 연루된 물품에 대한 봉인, 압류  (6) 피조사자의 은행계좌 조회  전항 제5항 혹은 제6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 담당자의 서면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며,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이 단독 혹은 관련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감독관리 작업을 시작하면,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거절, 방해해서는 안된다.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은 조사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적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법에 따라 기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30조 관제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제물품의 위법 수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관리감독 담화,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 본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신고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며, 신고인의 기밀은 유지한다.  제32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체결 혹은 참여하는 국제조약, 혹은 평등호혜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조직 등과 수출관제 협력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조직과 개인이 경외로 수출관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진행하고,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법률책임  제33조 수출경영자가 관제 물품 수출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관제물품 수출에 종사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 부문은 경고를 하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만 위안 이상 5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제34조 수출경영자가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할 경우,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며, 관제물품 수출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1)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제물품을 수출  (2) 수출허가증에서 규정한 허가범위를 넘어 관제물품을 수출  (3) 수출 금지한 관제물품을 수출  제35조 사기, 뇌물 등 정당치 않은 수단으로 관제물품 수출허가증을 획득, 혹은 비합법적으로 관제물품 수출허가증을 양도할 경우, 허가증을 철회, 수출허가증을 몰수,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20만 위안 미만의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관제물품 수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를 할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의 경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제36조 수출경영자가 수출관제 위법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대리, 물품운송, 택배, 통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 혹은 해관은 경고를 하며,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10만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10만 위안 미만의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제37조 수출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제어 명단에 열거된 수입상, 엔드유저와 거래를 진행한 경우, 국가수출관제부문은 경고를 하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하며, 수출전문경영 자격을 회수, 취소한다.  제38조 수출경영자가 감독 검사를 거절, 방해할 경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 혹은 해관은 경고를 하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하며, 관련 관제물품 수출경영 자격을 회수, 취소한다.  제3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수출경영자는 처벌 결정 발효일로부터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5년간 제출한 수출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 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지는 직원에 대해, 5년간 수출경영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수출관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종신적으로 수출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수출경영자의 본 법 위법상황을 신용기록으로 남긴다.   제40조 본 법의 수출관제 위법행위는 국가수출관제 관리부문에서 처분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해관에서 처분할 경우, 본 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진행한다.  제 41 조 관련 조직 혹은 개인이 국가의 수출관제관리부문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재심의의 결정은 최종 판결이다.  제42조 수출관제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이 직무태만, 사리사욕에 의한 불법행위, 직권남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 본 법의 관련 수출관제 관리규정을 위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을 줄 경우, 본 법에 따라 처분하는 외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분을 진행한다.  본 법을 위반하고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관제물품 혹은 허가를 받지 못한 수출관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조직과 개인이 관련 수출관제 관리규정을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협주거나, 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45조 관제물품의 국경 통과, 중계 운송, 통운, 재수출, 혹은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과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감독관리 장소에서 국외 수출을 할 경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핵 및 기타 관제물품의 수출에 대해 본 법에서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7조 무장역량의 해외 운용, 대외 군사교류, 군사원조 등에 사용되는 군수품의 수출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8조 임의 국가 혹은 지역이 수출관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第五十八号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于2020年10月17日通过，现予公布，自2020年12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20 年 10 月 17 日  全文如下：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2020年10月1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通过）  目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管制政策、管制清单和管制措施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节 两用物项出口管理  第三节 军品出口管理  第三章 监督管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五章 附则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加强和规范出口管制，制定本法。  第二条 国家对两用物项、军品、核以及其他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相关的货物、技术、服务等物项（以下统称管制物项）的出口管制，适用本法。  前款所称管制物项，包括物项相关的技术资料等数据。  本法所称出口管制，是指国家对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境外转移管制物项，以及中华人民共和国公民、法人和非法人组织向外国组织和个人提供管制物项，采取禁止或者限制性措施。  本法所称两用物项，是指既有民事用途，又有军事用途或者有助于提升军事潜力，特别是可以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的货物、技术和服务。  本法所称军品，是指用于军事目的的装备、专用生产设备以及其他相关货物、技术和服务。  本法所称核，是指核材料、核设备、反应堆用非核材料以及相关技术和服务。  第三条 出口管制工作应当坚持总体国家安全观，维护国际和平，统筹安全和发展，完善出口管制管理和服务。  第四条 国家实行统一的出口管制制度，通过制定管制清单、名录或者目录（以下统称管制清单）、实施出口许可等方式进行管理。  第五条 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承担出口管制职能的部门（以下统称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出口管制工作。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出口管制有关工作。  国家建立出口管制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出口管制工作重大事项。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密切配合，加强信息共享。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建立出口管制专家咨询机制，为出口管制工作提供咨询意见。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适时发布有关行业出口管制指南，引导出口经营者建立健全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规范经营。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出口管制有关工作。    第六条 国家加强出口管制国际合作，参与出口管制有关国际规则的制定。  第七条 出口经营者可以依法成立和参加有关的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  有关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章程对其成员提供与出口管制有关的服务，发挥协调和自律作用。  第二章 管制政策、管制清单和管制措施  第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出口管制政策，其中重大政策应当报国务院批准，或者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管制物项出口目的国家和地区进行评估，确定风险等级，采取相应的管制措施。  第九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据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根据出口管制政策，按照规定程序会同有关部门制定、调整管制物项出口管制清单，并及时公布。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出口管制清单以外的货物、技术和服务实施临时管制，并予以公告。临时管制的实施期限不超过二年。临时管制实施期限届满前应当及时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决定取消临时管制、延长临时管制或者将临时管制物项列入出口管制清单。  第十条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可以禁止相关管制物项的出口，或者禁止相关管 制物项向特定目的国家和地区、特定组织和个人出口。  第十一条 出口经营者从事管制物项出口，应当遵守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依法需要取得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的，应当取得相应的资格。  第十二条 国家对管制物项的出口实行许可制度。  出口管制清单所列管制物项或者临时管制 物项，出口经营者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许可。    出口管制清单所列管制物项以及临时管制物项之外的货物、技术和服务，出口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或者得到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通知，相关货物、技术和服务可能存在以下风险的，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许可：  （一）危害国家安全和利益；    （二）被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  （三）被用于恐怖主义目的。  出口经营者无法确定拟出口的货物、技术和服务是否属于本法规定的管制物项，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咨询的，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应当及时答复。  第十三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综合考虑下列因素，对出口经营者出口管制物项的申请进行审查，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  （一）国家安全和利益；  （二）国际义务和对外承诺；  （三）出口类型；  （四）管制物项敏感程度；  （五）出口目的国家或者地区；  （六）最终用户和最终用途；  （七）出口经营者的相关信用记录；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因素。  第十四条 出口经营者建立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且运行情况良好的，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其出口有关管制物项给予通用许可等便利措施。具体办法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规定。  第十五条 出口经营者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交管制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有关证明文件由最终用户或者最终用户所在国家和地区政府机构出具。  十六条 管制物项的最终用户应当承诺，未经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允许，不得擅自改变相关管制物项的最终用途或者向任何第三方转让。  出口经营者、进口商发现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有可能改变的，应当按照规定立即报告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  第十七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建立管制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风险管理制度 , 对管制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进行评估、核 查，加强最终用户和最终用途管理。    第十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对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商和最终用户，建立管控名单：  （一）违反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管理要求的；  （二）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  （三）将管制物项用于恐怖主义目的的。  对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和最终用户，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采取禁止、限制有关管制物项交易，责令中止有关管制物项出口等必要的措施。  出口经营者不得违反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出口经营者在特殊情况下确需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的，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申请。  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经采取措施，不再有第一款规定情形的，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移出管控名单；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将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移出管控名单。  第十九条 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代理报关企业出口管制货物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  出口货物的发货人未向海关交验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海关有证据表明出口货物可能属于出口管制范围的，应当向出口货物发货人提出质疑；海关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组织鉴别，并根据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作出的鉴别结论依法处置。在鉴别或者质疑期间，海关对出口货物不予放行。  第二十条 任何组织和个人不得为出口经营者从事出口管制违法行为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  第二节 两用物项出口管理  第二十一条 出口经营者向国家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出口两用物项时，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如实提交相关材料。  第二十二条 国家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部门受理两用物项出口申请，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两用物项出口申请进行审查，并在法定期限内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作出准予许可决定的，由发证机关统一颁发出口许可证。  第三节 军品出口管理  第二十三条 国家实行军品出口专营制度。从事军品出口的经营者，应当获得军品出口专营资格并在核定的经营范围内从事军品出口经营活动。  军品出口专营资格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审查批准。  第二十四条 军品出口经营者应当根据管制政策和产品属性，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办理军品出口立项、军品出口项目、军品出口合同审查批准手续。  重大军品出口立项、重大军品出口项目、重大军品出口合同，应当经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审查，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第二十五条 军品出口经营者在出口军品前，应当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领取军品出口许可证。  军品出口经营者出口军品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  第二十六条 军品出口经营者应当委托经批准的军品出口运输企业办理军品出口运输及相关业务。具体办法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第二十七条 军品出口经营者或者科研生产单位参加国际性军品展览，应当按照程序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办理审批手续。  第三章 监督管理  第二十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对管制物项出口活动进行监督检查。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调查，可以采取下列措施：  （一）进入被调查者营业场所或者其他有关场所进行检查；  （二）询问被调查者、利害关系人以及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三）查阅、复制被调查者、利害关系人以及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的有关单证、协议、会计账簿、业务函电等文件、资料；  （四）检查用于出口的运输工具，制止装载可疑的出口物项，责令运回非法出口的物项；  （五）查封、扣押相关涉案物项；  （六）查询被调查者的银行账户。  采取前款第五项、第六项措施，应当经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负责人书面批准。  第二十九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履行职责，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予以协助。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依法开展监督检查和调查工作，有关组织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有关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对调查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  第三十条 为加强管制物项出口管理，防范管制物项出口违法风险，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采取监管谈话、出具警示函等措施。  第三十一条 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任何组织和个人有权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举报，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三十二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根据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与其他国家或者地区、国际组织等开展出口管制合作与交流。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组织和个人向境外提供出口管制相关信息，应当依法进行；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不得提供。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出口经营者未取得相关管制物项的出口经营资格从事有关管制物项出口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  第三十四条 出口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一）未经许可擅自出口管制物项；  （二）超出出口许可证件规定的许可范围出口管制物项；  （三）出口禁止出口的管制物项。  第三十五条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获取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或者非法转让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的，撤销许可，收缴出口许可证，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二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二十万元的，并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罚款。  伪造、变造、买卖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的，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六条 明知出口经营者从事出口管制违法行为仍为其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三倍以上五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十万元的，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七条 出口经营者违反本法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十倍以上二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第三十八条 出口经营者拒绝、阻碍监督检查的，给予警告，并处十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第三十九条 违反本法规定受到处罚的出口经营者，自处罚决定生效之日起，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在五年内不受理其提出的出口许可申请；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禁止其在五年内从事有关出口经营活动，因出口管制违法行为受到刑事处罚的，终身不得从事有关出口经营活动。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将出口经营者违反本法的情况纳入信用记录。  第四十条 本法规定的出口管制违法行为，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进行处罚；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处罚的，由其依照本法进行处罚。  第四十一条 有关组织或者个人对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的不予许可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决定为最终裁决。  第四十二条 从事出口管制管理的国家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的，依法给予处分。  第四十三条 违反本法有关出口管制管理规定，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除依照本法规定处罚外，还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处理和处罚。  违反本法规定，出口国家禁止出口的管制物项或者未经许可出口管制物项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组织和个人，违反本法有关出口管制管理规定，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和利益，妨碍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依法处理并追究其法律责任。  第五章 附则  第四十五条 管制物项的过境、转运、通运、再出口或者从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和出口监管仓库、保税物流中心等保税监管场所向境外出口，依照本法的有关规定执行。  第四十六条 核以及其他管制物项的出口，本法未作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四十七条 用于武装力量海外运用、对外军事交流、军事援助等的军品出口，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第四十八条 任何国家或者地区滥用出口管制措施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和利益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对等采取措施。  第四十九条 本法自 2020 年 12 月 1 日起施行。 |